

봉강노인요양원 이용안내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성불로678-37

☎ 061)762-1691 FAX : 061)763-5120

홈페이지 : <https://cafe.daum.net/hcw>

● 시설 운영규정의 개요

1. 운영규정의 개요

- 1) 이용정원 : 23명
- 2) 이용계약 :
 - 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이용자와의 합의에 의해 계약기간 등이 결정됩니다.
 - 계약서의 의거하여, 계약의 해제는 이용자의 경우 14일 전에, 기관의 경우 7일 전에 통보 후 결정됩니다.
 - 계약서에 의거하여, 기관은 이용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3) 의료절차 :
 - 긴급 상황 시 기관은 즉각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의료적 조치를 취합니다.
 - 본 기관은 서명진광양한의원, 순천제일병원, 광양서울병원과 연계를 맺고 있습니다.
- 4)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
 - 시설물 사용은 주의를 기울여 파손이 없도록 하고, 이용자에 의한 파손의 경우 보호자와 합의하여 처리합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입소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제반 권리
 -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경 요청의 권리
-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 긴급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 입소자의 상태변화 시 당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3. 종사자 근무체계

- 1) 직종별 직원 배치 인력 :
 - * 기관의 대표 : 황찬우 (사회복지사 1급) - 시설장 : 박진숙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 김경수, 이지혜 (사회복지사 2급) - 간호조무사 : 정윤지
 - 요양보호사 : 황인자, 송은자, 노미순, 최종숙, 이성만
이현덕, 도이미호꼬, 정지현, 최임순
 - 조 리 원 : 이옥임

2) 평·휴일 종사자 인력 :

- 위의 직원들이 봉강노인요양원에 소속되어 사무행정, 간호조무, 영양보호, 조리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3) 종사자 교대기준 :

- 종사자는 월별 업무분장에 의한 교대근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4.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1~4등급) : 이용자를 기관에서 장기간 입소 보호해 드립니다.

5.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 식·간식비 재료가해당되며, 1일(3식) 7,500원 및 간식(2회) 1,500원입니다.

6. 장기요양급여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1) 시설의 규모, 설비 :

- 저희 기관은 전남 광양시 봉강면 성불로 678-37에 위치해 있으며, 연면적 560.3㎡의 2층 시설로 침실(9), 상담실(1), 물리치료실(1), 프로그램실(1), 사무실(1), 영양보호사실(1), 조리실(1), 세탁실(1), 화장실(1) 등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난방은 전기판넬을 통한 바닥난방 및 온풍기를 통한 공중난방 설비가 되어 있고, 냉방은 냉풍기를 통한 공중냉방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2) 상해보험 가입여부 :

- 영양보호사의 실수로 이용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저희 기관 모든 영양보호사는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저희 기관은 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등을 추가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 시설 현황표

1. 기관 상세 정보

요양기관명	봉강노인요양원	장기요양기관기호	1-46230-00037
지정일자	2009. 05. 20.	설치신고일자	2009. 05. 20.
전화번호	061) 762-1691	홈페이지주소	https://cafe.daum.net/hcw
주소	전남 광양시 봉강면 성불로678-37		
제공급여종류	노인요양시설	정원 및 현원	정원 23명

2. 시설규모

대지	4814	건물면적	560.37	소유형태	자가
----	------	------	--------	------	----

3. 시설현황

생활실	사무실	상담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10	1	1	1	1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1	1	4	1	0

4. 침실현황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특별침실	기타
1	3	4	1	1	0

5. 장기요양보험 급여 항목(2026년 1월 기준)

요양등급	기준일	비용 상세 내역		
		급여총액(원)	공단부담금 (80% / 원)	본인부담금 (20% / 원)
1등급	30일	2,792,100 (93,070*30일)	2,233,800	558,300
2등급	30일	2,590,200 (86,340*30일)	2,072,400	517,800
3~4등급	30일	2,446,200 (81,540*30일)	1,957,200	489,000

6. 장기요양보험 비급여 항목

분류	내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식재료비	1일 1회 2,500원	1일 3식 7,500원	225,000원	30일 기준
간식비	1일 1회 500원	1일 2식 1,500원	45,000원	30일 기준
계약의사 진료비	초진 재진	본인부담금 비율에 따른 감경	3,760원 2,670원	1회당

● 구비서류

1. 장기요양 인정서	6. 의사소견서(필요시)
2.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7. 주민등록 등본
3. 입소용 건강진단서	8. 가족관계 증명서
4. 코로나검사 결과지	9. 신분증(어르신/보호자-계약시 필요)
5. 복용약 처방전 (치매결과지, 골다공증결과지, 당뇨검사지)	10.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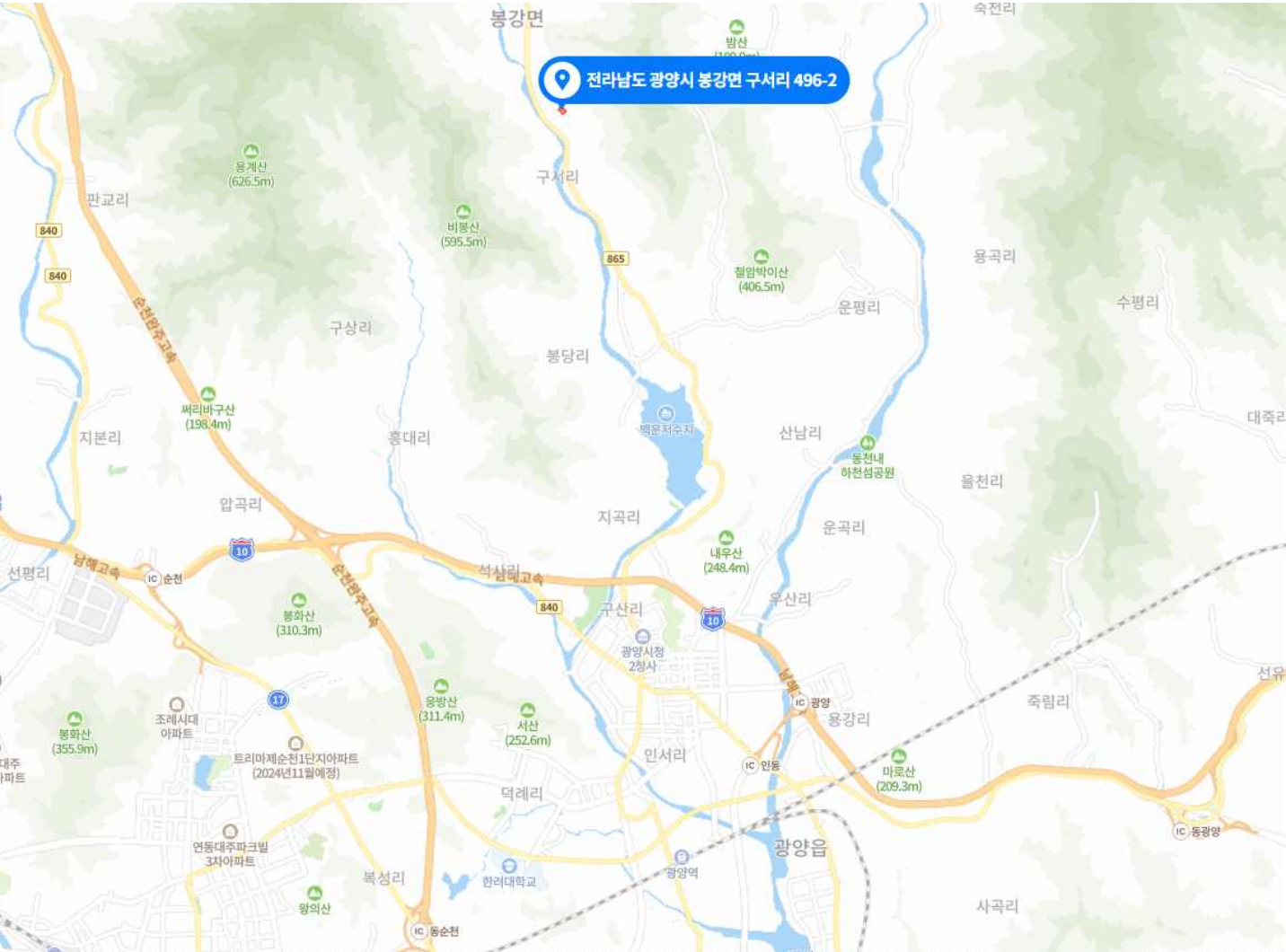
●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명	내용
사례관리	입소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욕구조사	입소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
원예활동	심신기능의 향상을 돕고 자아존중감 향상 및 우울증 감소
나들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정서적 안정 도모 (봄, 여름, 가을)
생신잔치	생신축하를 통한 삶의 활력증진 도모 (월 1회)
인지활동	정서적 안정과 인지기능증진 및 유지 (주 3회)
여가활동	독서활동, 미술치료, 운동치료, 음악치료 등 심신안정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통하여 자신에 대한 만족감 향상 (주 3회)
지역사회주민 참여프로그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행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소외감 탈피

● 후원 안내

- ▷ 후원품
 - 어르신 간식 및 부식재료 사용
 - 봉강노인요양원 ☎ 061) 762-1691

● 오시는길



도로명	광양시 봉강면 성불로678-37
지번	광양시 봉강면 구서리 496-2
전화	061) 762-1691
홈페이지	https://cafe.daum.net/hcw

● 노인 인권 보호

노인 권리 보고	노인 학대 신고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보호 전문기관 국번없이 1577-1389 ☎ 경찰서 112 ☎ 정무민원안내콜센터 110 ☎ 전남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하여 신고

● 노인 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성추행,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방 입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입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 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 고충처리절차 안내

접수 ⇨ 시설장 ⇨ 고충처리침에 따라 논의 ⇨ 결정 및 사후관리